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23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김종양・고동진・김상훈

한기호 • 박성훈 • 강선영

천하람 • 이성권 • 주호영

김민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이 사람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 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의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국민체육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 여지를 없애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나목 신설).

법률 제 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 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	제13조(사격의 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			
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4세 미만인 사람. 다만, 다	1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			
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u><신 설></u>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		
	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		
	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		
	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		
	로 등록된 사람		
<u>나.</u> (생 략)	<u>다.</u> (현행 나목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